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간의 상사분쟁상 CISG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송 수 련*

-
- I. 서 론
 - II. 홍콩내 CISG의 지위
 - III. 중국반환 이전의 CISG 적용사례
 - IV. 중국반환 이후의 CISG 적용사례
 - V. 결 론

주제어 : 중국, 홍콩, 준거법, CISG, 사례연구

I. 서 론

홍콩은 대중무역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무역주체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도 제4위의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홍콩의 기업친화적인 환경에 힘입어 중국시장의 진출거점으로서 정부규제가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까다로운 중국대신 홍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생산기반을 두고 제3국 수출을 위한 법인을 홍콩에 설립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홍콩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홍콩당사자로서 중국당사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중국은 홍콩을 섭외지역으로 인정하고,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거래를 국내거래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분쟁이 중국에서 해결되는 경우에 CISG의 원체약국인 중국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물품매매에 관한 이들 양자 간의 분쟁에 CISG를 적용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사중재에서 실체적 준거법으로써 CISG 제93조의 유보에 관한 사례의 일부로 다루어진 것¹⁾이거나, CIETAC에서 내려진 판정 중 하나를 선별하여 준거법의 결정기준을 논한 것이거나,²⁾ 또는 홍콩당사자와의 거래에서 CISG의 적용가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것³⁾이 전부이다. 따라서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분쟁에 있어 CISG를 적용하는 중국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홍콩내 CISG의 지위에 관한 역사적 배경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CISG가 준거법으로써 인용되거나 적용된 중국의 법원판결들 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들을 홍콩의 중국내 지위가 극적으로 변경되는 중국반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CISG를 적용 또는 배제하는 근거와 입장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기업이 홍콩당사자로서 중국당사자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거법으로써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한 국제적인 통일규범인 CISG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CISG가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합의에 관한 지침을 제

- 1)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적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통상법률, 법무부, 통권 제122호, 2013.
- 2) 송수련, “CISG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례 연구 - 중국과 홍콩 당사자간 분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4호, 2013.
- 3) 송수련, “홍콩당사자와 분쟁시 준거법의 결정 -CISG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9권 제2호, 2014.

공하고자 한다.

II. 홍콩내 CISG의 지위

1. 역사적 배경

1) 중국반환 이전

CISG의 홍콩내 지위와 관련하여 중국반환이전의 시기는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42년에 홍콩이 영국에 조차되어 중국이 홍콩에 대한 모든 주권을 상실한 시기이자, 1988년에 중국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하 ‘CISG’라 한다)』이 발효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중국에서 CISG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이므로,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가 결부된 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은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일국(중국 또는 영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홍콩은 여전히 영국의 관할권하에 있으나 중국에서는 1988년에 CISG가 발효된 시기로,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CISG 발효는 홍콩에 여하한의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라 한다)에 접수된 중국당사자와의 사건에서 CISG를 인용하거나 적용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⁴⁾

그러나 HKIAC와는 달리 중국의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까지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분쟁을涉外사건⁵⁾으로

4) 杨良宜, 国际货物买卖,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年版, 第475页.

5) 2013년 1월 7일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涉外민사관계법을 적용법〉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若干问题的解释(一))》은 당사자 일방이 외국공민·법인인 경우 이외에 홍콩·마카오당사자의 경우에도涉外민사관련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http://www.court.gov.cn>).

인식하여 CISG를 적용하여 판결 또는 판정하였는데, 의문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의문은 중국이 CISG 제95조 유보국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제3장에서 살펴본다.

2) 중국반환 이후

영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연합왕국 정부의 홍콩문제에 관한 공동성명(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이하 “공동성명”이라 한다)》에 따라 1997년 6월 30일에 중국정부에게 홍콩에 대한 주권을 이양하였다. 이양의 결과 중국이 이미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협약의 홍콩내 지위는 다음에 따라 결정되었다.

첫째, 공동성명의 ‘부속서1’은 중국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협약의 홍콩적용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한 이후에 중국의 중앙인민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둘째, 1997년 6월 20일에 중국정부는 UN 사무총장에게 《1997년 7월 1일 이후 홍콩에 적용되는 조약에 관한 통지서(Letter of notification of treaties applicable to Hong Kong after July 1, 1997)(이하 ‘통지서’라 한다)》를 기탁하였다. 통지서에는 공동성명과 홍콩기본법 그리고 1997년 7월 1일 이후에 홍콩에서 발효될 협약들의 목록⁶⁾이 포함되어었는데, 그 목록에는 CISG가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1997년 7월 1일에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의 기본법(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하 ‘홍콩기본법’이라 한다)》은 제153조를 통하여 중국이 이미 체결한 협약은 중국 중앙인민정부가 홍콩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홍콩정부의 의견을 구한 이후에 홍콩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CISG가 포함되지 않은 통지서의 기탁 이후에 홍콩내 CISG를 적용하기 위한 중국의 공식적인 절차이행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자세한 것은 at <http://www.law.hku.hk/ccpl/database/annex1.html> 참조.

그 결과 중국정부와 홍콩정부는 현재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분쟁에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국법원에서는 이와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⁷⁾

2. CISG 제93조 제4항의 적용 가부

CISG 제93조 제1항은 두개 이상의 영역으로 구성된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이 협약을 전체 영역 또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다만, CISG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국가승계의 경우에도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의 선언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생각건대, 중국은 CISG 가입시(또는 국가승계시)에 CISG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행한바 없고,⁹⁾ 홍콩 반환시에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지서를 동조 제2항에 따른 선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선언으로 인정하더라도 CISG가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적”으로 통고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은 CISG 제93조 제1항상의 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⁰⁾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 이 협약은 그 국가의 전체 영역에 적용”되므로, 중국이 체결한 CISG는 홍콩에도 적용된다. 이때 중국 또는 홍콩의 국내법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¹¹⁾ 이는 CISG 제93조 제4

7)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송수련, 전계 논문(각주 4), pp. 99~101 참조.

8)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는 송수련, 전계 논문(각주 4), pp. 99 참조.

9) 그 결과 홍콩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判決書選編(1995~2002), 法律出版社, 2002年版, 第141页).

10) 동지, 杜涛, "CISG之仲裁适用问题", 东方法学, 2009年 第03期, 上海市法学会, 2009年, 第100页; 王彦志, “《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对于香港的适用——实践分歧、法律分析与政策选择-”, 武大国际法评论, 2013年 第01期, 武汉大学国际法研究所, 2013年, 第137页; Fan Yang, "A Uniform Sales Law for the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o SAR and Taiwan - the CISG", *The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December 2011, p.362; Ulrich G. Schroeter, "The Status of Hong Kong and Macao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XVI, Fall 2004, p. 324.

항이 중국이 체결한 협약의 일부로서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자 1997년 6월 20일에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지서에서 CISG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¹²⁾를 준수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1997년에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통지서상 홍콩에 적용될 협약의 목록에서 CISG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¹³⁾ 그러나 CISG 제93조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유효한 적용배제선언의 절차를 이행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조 제4항에 따라 중국은 홍콩을 포함한 전체 영역에 CISG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¹⁴⁾

그러나 현재 중국과 홍콩의 사법기구는 다수의 판결에서 홍콩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통지서에 CISG를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ISG가 자동적으로 홍콩에 적용되는 것은 1국 2체제를 위배하는 것으로 중국과 홍콩이 이해하기 때문이다.¹⁵⁾ 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제4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Ⅲ. 중국반환 이전의 CISG 적용사례

홍콩이 영국에 조차된 이후부터 중국에서 CISG가 발효되기 이전까지 중국 당사자와 홍콩당사자가 결부된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거법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른 일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으므로, CISG의 적용가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없다.

11) Ulrich G. Schroeter, *op. cit.*, p. 325.

12) CISG 제93조 제4항에 기한 CISG의 적용 등.

13) 이를 이유로 홍콩에는 CISG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Gregory M. Duhl,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9", *William Mitchell Legal Studies Research*, June 9, 2010, p. 1314).

14) 동지, Fan Yang, *op. cit.* p.362; Ulrich G. Schroeter, *op. cit.*, p.325; 杜涛, 前揭论文, 第100页; 王彦志, 前揭论文, 第137页; 韩健, "CISG在中国国际商事仲裁中的适用", 武大国际法评论, 武汉大学出版社, 2008年版, 第277页.

15) 王彦志, 前揭论文, 第141页.

그러나 중국에서 CISG가 발효된 1988년부터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까지 중국법원과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CIETAC)(이하 ‘CIETAC’이라 한다)는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관계를 섭외계약으로 인식하여,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다수의 판결 또는 판정에서 CISG를 적용하였다. 이를 분설하면 아래와 같다.

1.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중국에서 CISG가 발효된 이후에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당사자자치를 존중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CISG를 적용하여 판결 또는 판정하였다.

예컨대, CIETAC은 CIETAC 1996.4.19. 선고 “카페인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¹⁶⁾에서 “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들은 중재신청서의 제출시에 CISG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본 사건에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면서 CISG 제78조를 적용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심리 중 당사자 간의 합의도 인정되었는데, CIETAC 1995.4.28. 선고 “선재 코일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¹⁷⁾에서 CIETAC은 “심리 중 당사자 간에 CISG의 적용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준거법으로서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면서, CISG 제74조를 적용하여 판정하였다. 중국법원의 입장도 동일한데, 씨아먼의 중급인민법원은 *Xiamen Trade v. Lian Zhong* 사건¹⁸⁾에서 “심리 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CIETAC 1996.11.15. 선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¹⁹⁾에서는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심리 중 매도인의 CISG 인용에 대한 매수인의 동의 역시 준거법에 관한 합의로 간주

16)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60329c1.html>.

17)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50428c1.html>.

18)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40905c1.html>.

19)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61115c1.html>.

하여 CISG를 준거법으로 인정하였다.

2.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상 명시적인 합의가 없으나 중재 심리 중에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ISG를 인용한 경우에, CIETAC은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CISG를 적용하였다.

예컨대, CIETAC 1996.2.5. 선고 “안티몬 주괴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²⁰⁾에서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가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매도인의 중재신청과 매수인의 변론에서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ISG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중재심리 중 준거법에 관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여, 본 사건에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CIETAC 1997.4.4. 선고 “검은 메론 씨앗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²¹⁾에서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모두가 심리 중 중국법과 함께 CISG를 인용하여 변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준거법으로써 중국법과 함께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당사자 모두가 심리 중 CISG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분쟁에 CISG를 적용하였다.

3. 국제적 협약 또는 관습으로 적용된 경우

CIETAC 1993.3.3. 선고 “활석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²²⁾에서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심리 중에도 CISG를 인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인 중국 매도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인 경우에, 피신청인인 홍콩 매수인의 물품부적합에 관한 물품검사 및 통지에 관한 시간제한을 규정한 CISG

20)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60205c2.html>.

21)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70404c1.html>.

22)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30330c1.html>.

제38조 내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면서 CISG를 적용하였다.

이는 중국법상 CISG의 지위에 대한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985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契約法)》(이하 ‘섭외경제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는 4문에서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관습에 따른다”²³⁾고 규정한다. 나아가 1987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이하 ‘민법통칙’이라 한다) 제142조는 3문에서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협약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국제관습을 적용할 수 있다”²⁴⁾고 규정한다.

그 결과 CISG가 관습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²⁵⁾ 예컨대, CIETAC 1999.6.30. 선고 “페퍼민트 오일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²⁶⁾에서 중재판정부는 “섭외경제계약법에 따르면 중국법이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는 국제관습을 적용할 수 있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건에 적용 가능한 가장 적절한 국제관습이다”라고 판시하여, CISG를 국제관습 중 하나로 인정하여 분쟁에 적용하였다.

이는 중국법원과 CIETAC이 그 내용에 익숙한 국내법에 기대어 협약을 해석·적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결과 CISG가 규정하는 적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게까지도 CISG가 확대·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다.²⁷⁾

23) 섭외경제계약법 제5조 4문 “中华人民共和国法律未作规定的，可以适用国际惯例”.

24) 민법통칙 제142조 3문 “中华人民共和国法律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没有规定的，可以适用国际惯例”.

25) 관습으로써 CISG를 적용하는 것은 비계약국당사자와의 분쟁에도 CISG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다(Dong Wu, “CIETAC’s Practice on the CISG”,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issue 2005 #2, p. 8).

26)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90630c1.html>(다만, 본 사건은 중국당사자와 영국당사자 간의 분쟁이다).

27) Yongping Xiao & Weidi Long, “Selected Topics o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 China”,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ume 20, Issue 1 Spring 2008, p. 71.

4. 법률혼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용된 경우

CIETAC 1996.4.4. 선고 “3겹 보드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²⁸⁾에서 양당사자는 매매계약상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 외에 CISG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준거법을 존중하여” CISG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것을 판정하였다.²⁹⁾

그러나 CIETAC 1997.6.27. 선고 “강남콩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³⁰⁾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으나, 심리 중 당사자 모두 중국법과 CISG를 인용하여 변론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가 중국법의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CISG는 보충적으로(as a reference) 적용한다”고 판시하여,³¹⁾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음에도 중국법의 법률혼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CISG를 적용할 것임을 판시하였다.

그러나涉外경제계약법 제6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입하였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이 계약과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을 적용한다. …”³²⁾고 규정한다. 나아가, 민법통칙 제142조 2문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협약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민법과 상충되는 경우에, … 국제협약이 적용된다”³³⁾고 규정하여, 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한다.

따라서 첫째, 양당사자가 CISG를 인용하여 변론한 것은 CISG 적용의 묵시적 합의로 보아야 하고, 둘째, 중국법의 유관규정이 국내법보다 협약의 우선 적용을 규정하며, 셋째, CISG의 체약국이 된다는 것은 특별법으로써 국내법에

28)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60404c1.html>.

29) 이와 같은 판정으로는 CIETAC 1997.4.11. 선고 “실리콘금속케이스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70411c1.html> 등이 있다.

30)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70627c1.html>.

31) 이와 같은 판정으로는 CIETAC 1993.3.26. 선고 “시멘트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30326c1.html> 등이 있다.

32)涉外경제계약법 제6조 1문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与合同有关的国际条约同中华人民共和国法律有不同规定的, 适用该国际条约的规定”.

33) 민법통칙 제142조 2문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中华人民共和国的民事法律有不同规定的, 适用国际条约的规定, 但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우선하여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중국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었어야 한다.

5. 소결

전술한 중국의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었다.³⁴⁾

둘째, 심리 중 당사자 모두가 CISG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되어 CISG가 적용되었다.

셋째,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로서 중국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CISG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합의로 인정되었다.

넷째,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최밀관련국법에 따라 준거법이 지정된 점³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CIETAC은 CISG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습으로 이해하여 중국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CISG를 적용하였다.

즉, 중국에서 1988년에 CISG가 발효된 이후에도 홍콩은 중국의 섬외지역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일견 CISG의 적용이 가능한 듯 보인다. 그러나 홍콩은 여전히 영국의 관할권하에 있었으므로 CISG가 발효될 수 없었고 중국은 CISG 제95조 유보국으로 미체약국과의 분쟁에는 CISG를 간접적용할 수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국법원 또는 CIETAC이 홍콩당사자와의 분쟁에 CISG를 적용할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홍콩이 섬외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시기 동안 다수의 판결 또는 판정에서 CISG를 적용하였는데,³⁶⁾ 이는 CISG 제93조 제1항상의 선언부재의 효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이 CISG 제95조 유보국임에 따라 홍콩이 섬외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CISG를 적용한 것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34) 섬외경제계약법 제5조 1문 “계약당사자는 계약상 분쟁에 적용할 법률을 선택할 수 있다 (合同当事人可以选择处理合同争议所适用的法律)”.

35) 섬외경제계약법 제5조 2문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当事人没有选择的, 适用与合同有最密切联系的国家的法律)”.

36) Fan Yang,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 the Current PRC Law and CIETAC Arbitration Practice”,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issue 2006 #2, pp. 19~20 ; Ulrich G. Schroeter, *op. cit.*, p. 313.

IV. 중국반환 이후의 CISG 적용사례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에 중국법원 또는 CIETAC의 입장에는 변화가 있었다. 즉, 중국은 홍콩을 여전히 CISG의 미체약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CISG의 체약국이기도 하나 CISG 제95조 유보국이기 때문에 CISG의 간접적용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상 중국의 국내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더라도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대부분의 경우에 CISG를 적용하지 않았다.

1.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에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서 준거법으로써 CISG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홍콩의 중국반환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CISG가 적용되었다.

예컨대, CIETAC 1999.8.10 선고 “우비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³⁷⁾에서 중재판정부는 “중국기업과 홍콩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은 특수한 섭외경제계약이긴 하나, 중국에서 CISG가 발효될 당시에 홍콩에도 CISG가 적용된다는 선언을 한바 없이 때문에, 중국기업과 홍콩기업 간의 분쟁에 CISG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양당사자가 매매계약상 명시적으로 CISG의 적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CISG를 준거법으로 인정하였다.³⁸⁾

다만, 중재판정부는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또 다른 근거로 “중국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CISG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을 판단함에 있어 현행 섭외경제계약법보다 CISG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37)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編, 前掲書(2002年版), 第136~148頁.

38) 이와 같은 판정으로는 CIETAC 1999.4.2. 선고 “회색의류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90402c1.html>; CIETAC 2008.1.9. 선고 “금속규소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80109c1.html> 등이 있다.

있음에 따라 CISG를 적용한다”고 판시하여, 중국내 특별법으로서 CISG의 지위에 대한 오인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IETAC 1999.1.28. 선고 “냉동설비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³⁹⁾에서 중재판정부는 “중재 심리 중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질의한 결과 양당사자는 본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으로써 아래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1) 중국법; 그리고

(2) 홍콩은 CISG의 체약국은 아니지만, CISG의 적용에 합의하였다. ...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상호간의 합의를 존중한다”고 실시하여, 비록 매매계약상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중재 심리 중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른 바를 존중하여 CISG의 적용을 인정하였다.

2. 국제적 협약 또는 관습으로 적용된 경우

CIETAC 1998.7.30 “냉간압연강판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⁴⁰⁾에서 피신청인인 홍콩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이후에 신청인인 중국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을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홍콩 매도인은 물품의 파손은 운송인과 중국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여 중재가 신청되었다. 중재 심리 중 중국 매수인은 CISG 제50조를 인용하여 물품의 시장가격이 하락 중에 있었으므로 재매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준거법에 관한 판단 없이, 나아가, 그 근거를 적시함이 없이 CISG 제50조를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할 것을 판정하였다.

즉, 홍콩반환 이후에도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涉外경제계약법 제5조 4문 또는 민법통칙 제142조 3문에 기하여 CISG를 적용함으로써, 중국법에 기대어 CISG를 적용하는 법률해석의 오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⁴¹⁾

다만, 중국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이하 “중국계약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따라涉外경제계약법은 중국계약법으로 대체되었는데, 중국계약법은涉外경제계약법 제5조와 같은 규

39)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90128c1.html>.

40)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編, 前掲书(2002年版), 第126~136頁.

41) 이는 법률가나 중재인이 국내법에 더욱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Dong Wu, *op. cit.*, p. 5).

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시행 이후에는 민법통칙 제142조가 국내법과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습과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 다만, 지난 2011년 4월 1일에 중국최초로 단행법으로서의 국제사법(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에는 본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법적흡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적용된 경우

CIETAC 2007.3.23. 선고 “인쇄기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⁴²⁾에서 양당사자는 계약상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규율·해석되고 CISG 및 그 외 협약과 관습이 참고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이에 중재판정부는 “...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는 CISG와 그 외 협약과 관습을 참고한다”고 판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법률의 흡결을 보충하는 기능으로써 CISG의 적용을 판시하였다.⁴³⁾

다만, 본 사건과 같이 중국법률의 흡결을 보충하는 기능으로써 CISG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국법률상의 흡결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CISG가 인용·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CIETAC 2000.2.11. 선고 “실리콘 금속케이스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⁴⁴⁾에서 중재판정부는 “... 유관규정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국법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CISG를 적용한다.

(1) 양당사자를 대변하는 변호사 모두가 심리 중 CISG를 인용하였다.

(2) CISG는 상이한 법체계를 고려한 통일법이므로, 상이한 관할권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절하다. 나아가, 일부 국가의 국내법과 비교할 경우에, CISG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을 동일하게 대변한다”고 설시하여, 중국법률의 흡결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CISG의 적용을 인정하였다.⁴⁵⁾

42)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70323c1.html>.

43) 이와 같은 사례로는 CIETAC 2007.3.23. 선고 “오프셋인쇄기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70323c1.html> 등이 있다.

44) at <http://cisgw3.law.pace.edu/cases/000211c1.html>.

그러나 심리 중 양당사자가 CISG를 인용하여 변론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CIETAC 1996.2.5. 선고 “안티몬 주괴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이나 CIETAC 1997.4.4. 선고 “검은 메론 씨앗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과 같이 CISG의 적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CISG 제 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체법으로써 CISG가 중국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한편, *Nanjing Resources Group v. Tian An Insurance Co. Ltd.* 사건⁴⁷⁾에서 재판부는 “(중국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CISG 및 Incoterms1990이 본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피보험이익은 위험과 소유권의 이전시에 발생하는 데 위험의 이전은 CISG상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고 실시하여, 법 적용상의 또 다른 오류를 범하였다. 즉, CISG는 제9조에서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에 구속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중국법에 우선하여 CISG를 그리고 CISG에 우선하여 Incoterms1990을 적용하였어야 한다.

4. 적용배제

당사자 간에 준거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⁴⁸⁾ 예컨대, *Wuhan Yinfeng Data Network Co. Ltd. et al v. Hong Kong Mingbao Hangdongzhu* 사건⁴⁹⁾에서 원고의 CISG 적용주장에 대하여 상소법원인 호북

45) 이와 같은 사례로는 CIETAC 1999.4.5 “에어컨 부품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90405c1.html>, CIETAC 1998.1. 22. 선고 “연강압연강판 매매계약에 관한 판정” at <http://cisgw3.law.pace.edu/cases/980122c1.html> 등이 있다.

46) 동지, Bruno Zeller, "CISG and CHINA": IN Michael R. Will ed., *Dialog Deutschland-Schweiz VII*,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de Genève(1999), p. 15 ; Dong Wu, *op. cit.*, p. 5.

47) 武汉海事法院, Case No. (2000)武海法商字第91号, 10 September 2002, at http://aff.whu.edu.cn/cisgchina/en/news_view.asp?newsid=92.

48) 그러나 Fan Yang, *op cit*(footnote 34), pp. 19~20에 따르면 1997년에 홍콩의 중국반환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중국법원은 중국과 홍콩간의 계약에 CISG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4건은 모두 반환이전의 사건들이다.

성 고등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별도의 법률체제로 운영되나 홍콩은 CISG의 계약국이 아니므로, 본 사건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간의 거래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CISG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⁵⁰⁾

나아가 *Tung Hang(Asia) Co. Ltd. v. Shenzhen Haizhongbao Aquatic Products Trading Co. Ltd.* 사건⁵¹⁾에서 양당사자는 계약체결지 또는 분쟁발생시 물품소재지가 중국인 경우 또는 피고가 중국법인인 경우에 중국법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당사자는 중국 심천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쟁발생시 물품은 중국 광주시 황포항에 있었다. 그 결과 중재판정부는 CISG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법을 적용하였다.

즉, 이 시기 동안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명시적인 배제합의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CISG가 적용을 배제하였다. 특히, 중국은 사법관여를 위하여 사법에도 공법적인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⁵²⁾ CISG가 명백히 적용되고, 나아가, 우선되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CISG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⁵³⁾

5. 소결

이 시기 동안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홍콩을 여전히 섭외지역으로 인정하

49) 湖北省高级人民法院, (2002) 鄂民四终字第53号, at http://aff.whu.edu.cn/cisgchina/en/news_view.asp?newsid=91.

50) Possehl(HK) Limited v. China Metals & Minerals Import & Export(Shenshen) Corporation(广东省高级人民法院, 2005, Case No. (2005) 粤高法民四终字第293号, http://aff.whu.edu.cn/cisgchina/en/news_view.asp?newsid=95)에서도 CISG 제1조 제1항 가호의 규정을 이유로 CISG의 적용을 배척하였다.

51) 广东省高级人民法院, (1998) 粤法经二上字第424号, 3 January 1999, http://aff.whu.edu.cn/cisgchina/en/news_view.asp?newsid=115.

52) 섭외경제계약법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일반공공이익과 상치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계약중의 조항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나 일반 공공이익에 따라 그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或者社会公共利益的合同无效。合同中的条款违反中华人民共和国法律或者社会公共利益的, 经当事人协商同意予以取消或者改正后, 不影响合同的效力).

53) Bruno Zeller, *op. cit.*, p. 15.

면서도, 홍콩반환 이전과는 달리, CISG 제95조 유보국임을 이유로 홍콩당사자와의 분쟁에 CISG를 적용하지 않았다. 즉,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CISG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 내려진 대부분의 판결 또는 판정에는 최밀관련국법으로써 중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었다.⁵⁴⁾ 따라서 이 시기 동안 묵시적인 합의로써 CISG가 적용된 사례는 없으며 일방당사자의 단순한 인용·주장만으로는 CISG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반환이전과는 달리 중국이 CISG 제95조 유보국임을 이유로 CISG의 적용이 배제된 사례도 있다.

다만,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일부 판결 또는 판정에서 여전히涉外경제계약법 제5조 또는 민법통칙 제145조⁵⁵⁾에 따라 최밀관련국법으로써 중국법의 적용을 판단하고, 민법통칙 제142조에 기하여 CISG를 보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CISG의 적용가부는 CISG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통칙 제142조에 따라 그 가부가 결정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CISG를 중국법상 관습의 지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민법통칙은 제142조 2문과 3문에서 협약(国际条约)과 관습(国际惯例)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CISG는 독자적인 협약의 지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민법통칙 제142조는 중국법 또는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또한涉外경제계약법 제5조는 중국법이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관습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바,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CISG의 적용가부와 관계없이 중국법에 기대어 CISG를 관습으로 이해하여 중국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CISG가 독자적인 지위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CISG의 조문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54) 예컨대, CIETAC 1998.1.14. “철사 매매에 관한 판정”(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前掲书(2002年版), 第37-42页); CIETAC 1998.4.10. “컴퓨터설비 매매에 관한 판정”(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前掲书(2002年版), 第93~102页); CIETAC 1999.8.10. “붉은 구리 매매에 관한 판정”(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前掲书(2002年版), 第317-346页); CIETAC 2005.5.12. “의약품 매매에 관한 판정”(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前掲书(2006年版), 第201-213页); CIETAC 2005.10.28. “모니터 매매에 관한 판정”(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編, 前掲书(2006年版), 第322~213页) 등.

55) 민법통칙 제145조 2문涉外계약의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한다(涉外合同的当事人没有选择的, 适用与合同有最密切联系的国家的法律).

즉, 중국이 CISG를 승인한 것은 CISG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확정하는 것이므로,⁵⁶⁾ CISG는 중국법의 일부로서⁵⁷⁾ 중국의 민·상법 또는 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따라 CISG의 적용가부는 물론 절차와 해석 그리고 적용 등은 CISG의 조문 그 자체로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에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홍콩반환 이전과는 달리, 홍콩이 섬외지역이자 중국이 CISG 제95조 유보국임을 이유로, 당사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중국당사자와 홍콩당사자 간의 분쟁에 CISG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 CISG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중국의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최밀관련국법으로써 중국법의 적용을 판단하고, 필요에 따라 민법통칙 제142조에 기하여 CISG를 보충적용한다. 그 결과 이들 간의 분쟁에서 CISG의 적용가부는 CISG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통칙 제142조에 따른다.

이는 CISG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이 저해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정부가 CISG 제93조 제1항상의 공식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홍콩에서도 CISG가 발효되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분쟁을 소송 또는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손실은 통상 금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CISG는 중국계약법과 비교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여러 특칙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CISG의 적용이 유리하다. 다만, 현재 중국법원 또는 CIETAC은 계약상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한 CISG를 적용하지 않을

56)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2조 제1항 나호.

57) Dong Wu는 *op. cit.* p. 9에서 중국법은 CISG가 국내법의 일부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중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중국법의 일부로서 CISG가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것으로 보이므로,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중국당사자와의 계약상 준거법으로서 CISG의 지정에 반드시 합의하여야 한다. 특히, CISG가 중국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리시에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법이자 실체법이고 나아가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CISG의 지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쳐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문화경, “국제상사중재에서 분쟁의 실체적 준거법으로서 CISG의 적용”, 통상법률, 법무부, 통권 제122호, 2013.
- 송수련, “CISG의 적용에 관한 CIETAC 중재사례 연구 - 중국과 홍콩 당사자 간 분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4호, 2013.
- _____, “홍콩당사자와 분쟁시 준거법의 결정 -CISG를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9권 제2호, 2014.
- 杜涛, “CISG之仲裁适用问题”, 《东方法学》 2009年 第03期, 上海市法学会, 2009年.
- 韩健, “CISG在中国国际商事仲裁中的适用”, 《武大国际法评论》, 武汉大学出版社, 2008年版.
- 王彦志, “《联合国国际货物销售合同公约》对于香港的适用 -实践分歧、法律分析与政策选择-”, 《武大国际法评论》, 2013年 第01期, 武汉大学国际法研究所, 2013年.
- 杨良宜, 《国际货物买卖》,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9年版.
-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 編, 《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判決書選編(1995-2002)&(2003-2006)》, 法律出版社, 2002年版 & 2006年版.
- Duhl Gregory M.,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09”, *William Mitchell Legal Studies Research*, June 9, 2010.
- Schroeter Ulrich G., “The Status of Hong Kong and Macao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XVI, Fall 2004.
- Will Michael R. ed., *Dialog Deutschland-Schweiz VII*,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de Genève, 1999.
- Wu Dong, “CIETAC's Practice on the CISG”,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issue 2005 #2.

Xiao Yongping & Long Weidi, "Selected Topics on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 China", *Pace International Law Review*, Volume 20, Issue 1 Spring 2008.

Yang Fan, "A Uniform Sales Law for the Mainland China, Hong Kong SAR, Macao SAR and Taiwan - the CISG", *The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ARC A-rated Journal)*, December 2011.

_____, "The Application of the CISG in the Current PRC Law and CIETAC Arbitration Practice", *Nordic Journal of Commercial Law*, issue 2006 #2.

ABSTRACT

A Study on the CISG Cases between China Party and HK Party

Song, Soo Ryun

Since the CISG came into force in 1 January 1988 in China, many cas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have been decided under the CISG during the period of about 30 years of its application in China. After the CISG entered into force and before the handovers of HK in 1997, the China courts or CIETAC applied CISG to the disputes between China party and HK party in many cases, even PRC reserved CISG article 95.

On the Contrary, after the handovers of HK in 1997, the China courts or CIETAC did not apply CISG to the disputes between them in many cases with the reason that China filed an CISG article 95 declaration and HK is not a contracting unit. The matter is the China's contract law and civil law have convinced that the CISG is highly applicable as "International Practice" under the China law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so sometimes China courts or CIETAC applied CISG based on the China law not CISG itself.

As a result, some interpretation made by the China court or CIETAC might no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ISG and to some extent even impaired the uniform application of the CISG. So the author expects more and more valuable cases to be reported which will be good for its further development.

Key Words : China, HK, Applicable Law, CISG, Case Study